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제출 안내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개별기업보고서, 통합기업보고서, 국가별보고서) 제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2개월 이내에 각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예 : 2021.6월말 법인은 2022.6.30.까지 제출)

다음과 같이 제출대상 및 제출방법 등을 안내해드리오니 관련 내용을 확인하시어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16, 동법시행령 §33~35)

제출대상

- (개별·통합기업보고서) ① 해당 과세연도 매출액이 1천억 원을 초과하고 ②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금액 합계액이 500억 원을 초과하는 법인
- (국가별보고서) 다음의 ①과 ②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① 직전 과세연도 연결재무제표의 매출액이 1조 원을 초과하는 다국적기업 그룹의 국내 지배기업으로서 최상위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법인
 - ② 직전 과세연도 연결재무제표의 매출액이 7억5천만유로(상당액)를 초과하는 다국적기업 그룹으로서 국외에 최종모회사가 있는 국내 관계회사, 다만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에 대한 자료」를 제출기한 내 제출한 자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 면제가. 최종모회사 소재지국 법령상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가 있고 교환되는 경우 나. 다른 국내관계회사가 국가별보고서를 대표하여 제출하는 경우 다. 제3국에 소재하는 관계회사가 국가별보고서를 대리 제출하고 교환되는 경우

제출방법

다음의 사이트 접속을 통한 전자제출만 가능합니다.

- (개별·통합기업보고서) 홈택스(hometax.go.kr)
- (국가별보고서) AXIS 포털(axis.go.kr)

제출기한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2개월 이내

- * (유의사항) 보고서를 미(거짓)제출한 경우 보고서별로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제도와 관련한 서식 등 세부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 (nts.go.kr>국세정책/제도 > 국제조세정보 > 국제조세 주요 신고제도 >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궁금하신 내용은 ○○지방국세청 법인세과 (☎00-0000-0000)로 문의 바랍니다.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전자제출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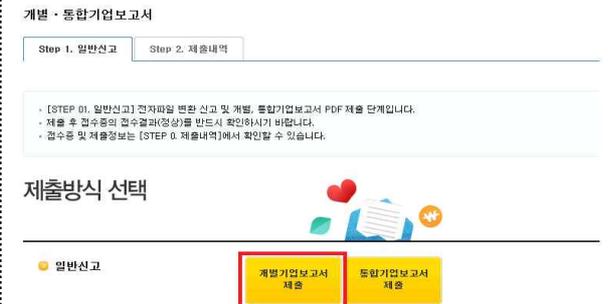
개별·통합기업보고서

국가별보고서

1. 국제청 홈택스(hometax.go.kr) 접속하여, 로그인 후 메인화면 신고/납부 > 일반신고 > 개별·통합기업 보고서 제출



2. '개별기업보고서 제출', 또는 '통합기업보고서 제출' 버튼을 클릭(개별기업보고서 먼저 설명)



3. '개별기업보고서 제출' 클릭 후 전자파일변환 (부표) > 변환결과조회(부표) > 'PDF' 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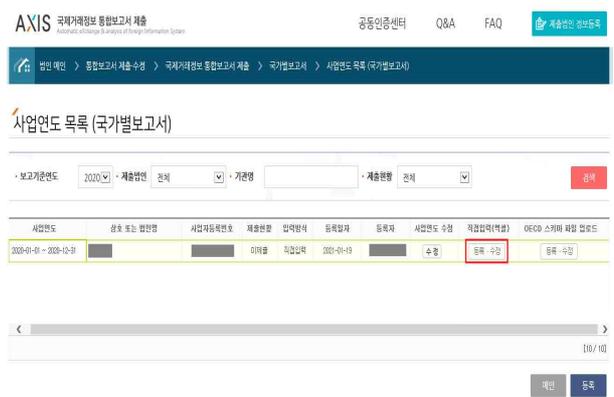
4. '통합기업보고서 제출' 클릭 후 기본정보 및 동일 연결 재무제표 납세의무자 > 'PDF' 제출

1. AXIS 포털(axis.go.kr) 접속 후, 우측 화면 법인 (국가별보고서)의 제출법인 정보등록* 후 로그인** 하고, '국가별보고서 제출수정' 버튼을 클릭

* 법인 공동인증서 필요
** 기존 가입자는 ID, 공동인증서로 바로 로그인 가능



2. '사업연도 목록(국가별보고서)' 화면으로 이동하여 직접입력(엑셀) 또는 OECD 스키마 파일 업로드의 '등록·수정' 버튼을 클릭



- 3-1. (직접입력(엑셀)) 배분내역, 관계회사 등을 직접 입력하고 '저장' 버튼을 클릭하거나 시스템에서 제공한 입력서식 엑셀을 다운받아 엑셀을 작성하고 엑셀 업로드 버튼을 클릭하여 파일을 등록
- 3-2. (OECD 스키마 파일 업로드) 국가별 보고서 파일업로드 목록에서 '등록' 버튼을 클릭하여 저장할 파일을 선택하고 '등록' 버튼을 클릭

